

2021년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선발예정인원: 5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합계				5		
경력경쟁	7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1	도 1	선박개론, 항해학, 해상안전론
		해양수산	선박항해	1	도 1	물리, 선박일반, 항해
	8급	해양수산	선박기관	1	도 1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해양수산	선박항해	1	도 1	물리, 선박일반, 항해
	9급	해양수산	선박기관	1	도 1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 **응영표시**된 과목은 도 자체 출제 과목으로 비공개합니다.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 합니다.

2. 시험 방법

구분	직급	1차 시험	2차 시험	3차시험	4차 시험
제6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	7급, 8급, 9급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시험시간(1·2차 병합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60분(10:00 ~ 11:00)

나. 제3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경력 등) 심사)

다.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이 전역 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으로 봄.)

다. **거주지 제한**: ①과 ②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의 요건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라. **응시연령**

시험구분	직렬·직류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6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	7급	20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8급·9급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마. **자격(면허)증 제한(필수)**: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 기준 유효해야 함

시험명	직급	직렬(류)	자격(면허)증 제한 사항
제6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 2급 항해사 또는 3급 항해사(관련경력 2년이상)
	8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 3급 항해사 또는 4급 항해사
		해양수산 (선박기관)	· 3급 기관사 또는 4급 기관사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 5급 항해사 또는 6급 항해사
해양수산 (선박기관)		· 5급 기관사 또는 6급 기관사	

※ 항해사·기관사 자격증은 상선면허로 응시자격 제한

※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별도의 안내기간 내에 자격(면허)증 제출

※ 7급 시험에 응시한 경우, 3급 항해사 소지자의 관련경력 인정 범위: 3급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①과 ②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① 국제항해선박(여객선 및 화물선)의 선장 자격으로 1년 이상의 승무 경력을 포함한 항해사 승무 경력 2년 이상

② 총톤수 150톤 이상의 내항여객선 또는 내항화물선이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선 또는 도선의 선장 자격으로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을 포함한 항해사 승무 경력 2년 이상

* 승무 경력 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함.

** 1월에 미달되는 승무 경력 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5. 31.(월) ~6 .2.(수)	5. 31.(월) ~6 .2.(수)	필기시험	6. 10.(목)	6. 19.(토)	7. 5.(월)
		면접시험	7. 5.(월)	7. 13.(화)	7. 23.(금)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 일자리/중소기업 → 시험·채용정보 → 지방공무원 → 시험/채용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24시간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1522-0660

다. **응시수수료**: 8급·9급은 5,000원, 7급은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일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크기 3.5cm × 4.5cm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 단, 가산점과 관련된 자격증 추가 등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2)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의 변경은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3)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5)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하여야 하며, 접수 시 응시원서 접수절차를 누락하는 등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6)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 이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 (7)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학력(학교장 추천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어학능력 가산점은 시험명, 응시번호, 시험일자를 입력하되 등급이 없는 어학시험(토익, 토플, 텡스, 지텔프, 한어수평고시, JPT, JLPT)인 경우 취득점수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가점은 당해 시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자격증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2)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 합니다.
※ 선택과목은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조정전 점수와 조정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이면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전 점수와 조정점수 둘 다 4할 미만인 경우만 과락적용)
- (3) 원서접수 시 어학능력 성적을 포함한 모든 가산점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성적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가.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1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1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 · 토 익(TOEIC): 900점 이상 · 토 플(TOEFL):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텡 스(TEPS): 828점 이상<또는 뉴텡스(New TEPS): 471점 이상> · 지 텔 프(G-TELP): Level 1의 85점 이상 · 오 픽(OP1c): AL 이상(영어, 일본어, 중국어) · 플 렉 스(FLEX): 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6급 18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8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100점이상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2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2급 · 토익(TOEIC): 850점 이상 · 토플(TOEFL):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텡스(TEPS): 779점 이상<또는 뉴텡스(New TEPS): 437점 이상> · 지텔프(G-TELP): Level 2의 83점 이상 · 오픽(OPic): IM3 이상(영어, 중국어), IH 이상(일본어) · 플렉스(FLEX):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5급 210점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740점 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50점 이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3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2급 · 토익(TOEIC): 775점 이상 · 토플(TOEFL):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텡스(TEPS): 700점 이상<또는 뉴텡스(New TEPS): 386점 이상> · 지텔프(G-TELP): Level 2의 73점 이상 · 오픽(OPic): IM2 이상(영어, 중국어), IM3 이상(일본어) · 플렉스(FLEX):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5급 180점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640점 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00점 이상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이내)**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직렬별 적용 가산점, 수화통역사 자격증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 적용 됩니다.

- 어학능력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등록(7급 시험)과는 별도로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이내)한 경우 어학능력점수에 따라 가산점이 인정되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반드시 어학점수에 관한 사항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필기시험을 실시하는 모든 시험 해당)**

※ 한어수평고시(신HSK)인 경우 필기시험 후 1주일 이내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점 적용이 됩니다.

(2)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3%(한국농아인협회 시행)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합니다.

7.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공직 부적격자의 사전 검증을 위한 면접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렬(류)별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면접성적 불량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시험·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고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핸드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MP3 등 통신장비, 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카드 등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아.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관련 증빙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064-710-6223-6225)으로 문의 바랍니다.